

「구미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으로 정정된 ‘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’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 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을 구미시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명시
-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5조)
 -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역할 및 수행사항 명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2024년도 3월 5일자로 개정된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 제2의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의 출자·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개정이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안 제5조 “다만,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.”에서 언급한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u>구미시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이버 안보 업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 에 <u>구미시의 출자·출연기관 사</u> 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u><신 설></u> 1. 2. (생 략) 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 조제2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 는 기관”이란 구미시가 설립하 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	<u>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</u>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산하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나. 구미시가 설립하고 「지방 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 자·출연기관 2. 3. (원안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구미 시 및 산하 공공기관(이하 “각 기관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
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기
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4조(시장의 지도·감독) ① 시
장은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
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
독한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사
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하
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
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
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·운
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 출
자·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
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. 다
만,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
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
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
로 대신한다.

1. ~ 12. (생략)

제6조(시행규칙) 사이버보안 업무
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 제
1항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
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
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
침에 따라 처리하고, 그 외 세부
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
사항은 구미시장이 따로 정한
다.

제4조(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
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및
각 기관-----
-----.

② ---- 각 기관-----

-----.

제5조(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 각
기관-----

-----.

1. ~ 12. (원안과 같음)

제6조(시행규칙) -----
----- 영 제3조의2제1
항제2호-----

----- 시장-----
--.